



광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시 G 보

제39호 2026. 9. 30.(수)

규 정

광양시 공고 제2026-478호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1

입법예고

광양시 공고 제2026-2103호 「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 .. 9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6-247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 15
광양시 고시 제2026-248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6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6-2088호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 17
광양시 공고 제2026-2091호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 18
광양시 공고 제2026-2093호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 19
광양시 공고 제2026-2111호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20
광양시 공고 제2026-2124호 공시송달공고 2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713, 행정2713)

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6년 9월 30일

광 양 시 장 박 성 현

광양시 규정 제478호

붙임 :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

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”을 “광양시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사무소”를 “대외협력사무소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파견자”를 각각 “근무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소재지)”를 “(소재지 및 근무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서울사무소”를 “대외협력사무소”로, “서울특별시에 둔다”를 “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비 확보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근무자를 광양시 본청 또는 다른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광양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시는”을 “광양시는”으로, “주택보조비, 주택주거비”를 “임차보증금, 주택보조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도권 내”를 “수도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등 근무지 인근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주택보조비 등의 지원기간은 인사발령에 따른”을 “주택보조비의 지원기간은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택보조비 등을”을 “주택보조비를”로, “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]

주택보조비 등 지원기준(제7조 관련)

☐ 서울사무소

연번	지원항목	지원한도	비고
1	주택 임차보증금	예산의 범위	실비
2	주택보조비	월 100만원	실비

☐ 세종사무소

연번	지원항목	지원한도	비고
1	주택 임차보증금	예산의 범위	실비
2	주택보조비	월 80만원	실비



주택보조비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직위	전화번호	
	주소(주거지)		
	주소(근무지)		
임대차 주택사항	주택의 형태	면적(제곱미터)	지역
	신청 주거지원금	임대보증금	월세

「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. 아울러,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주택보조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광양시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광양시장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임대차계약서 사본(「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제9조에 따른 주택보조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) 2. 입금계좌 통장 사본 3.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</u>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국·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의 존재원 확보 추진 업무를 지원할 광양시 <u>서울사무소</u>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주거지”란 <u>파견자</u>가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. 2. “근무지”란 <u>파견자</u>가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. 3. “주택보조비”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<u>파견자</u>가 주거지를 근무지로 이전한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. 4. “주택주거비”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<u>파견자</u>가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무지로 통근하는 경우에 <u>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.</u>	<u>광양시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</u> 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대외협력사무소</u>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<u>근무자</u>----- -----. 2. ----- <u>근무자</u>----- -----. 3. ----- ----- <u>근무자</u>----- -----. <삭 제>



제3조(소재지) 광양시 서울사무소(이하 “사무소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<신 설>

제5조(예산지원) ① 사무실 임차료, 주택보조비 등 사무소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예산으로 부담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사무실 임차료) ①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7조(주택보조비 등 지원) ① 시는 사무소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, 주택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는 별표와 같다.

② 사무소 근무자가 수도권 내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기간) 주택보조비 등의 지

제3조(소재지 및 근무지 등) ① -----
----- 대외협력사무소-----
-----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다.

②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비 확보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근무자를 광양시 본청 또는 다른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지원) ① -----

----- 광양시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무실 임차료) ① -----
-----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주택보조비 등 지원) ① 광양시는 ----- 임차보증금, 주택보조비-----

-----.

② ----- 수도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등 근무지 인근-----
-----.

제8조(지원기간) 주택보조비의 지원기



원기간은 인사발령에 따른 해당 근무지 근무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지급신청 등) 주택보조비 등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간은 -----
-----.

제9조(지급신청 등) 주택보조비를 ---

-- 시장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

「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6년 9월 29일

광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2. 입법취지(개정이유)

- 「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 등을 변경하여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 - 조례 제명 및 명칭변경 ‘재향경우회’ 를 ‘재향경찰회’ 로 변경

4. 입법예고

- 예고기간: 2026. 9. 29. ~ 10. 19.(21일간)
- 예고방법: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

5. 조례 개정안: [붙임2]

6. 의견제출

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

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
(참조: 총무과 시정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서면(직접방문), 팩스, 우편, 전자우편

라. 의견제출할 곳

- 주 소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, 총무과 (우 57785)
- 전 화: 061-797-2240
- 팩 스: 061-797-2579
- 전자우편: ojy7695@korea.kr

※ 우편(전자우편)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조례 개정안 1부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붙임 2

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광양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”을 “「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」”으로, “재향경우회의”를 “재향경찰회의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재향경우회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제2항을 “재향경찰회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」 제5조제2항으로, “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”를 “대한민국재향경찰회 지역회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제3항”을 “「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」 제15조제3항”으로, “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)”를 “재향경찰회(이하 “경찰회”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경우회”를 각각 “경찰회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경우회”를 “경찰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산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광양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광양시 재향경우회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. 제3조(지원사업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 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제4조(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) ① <u>경우회</u>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	<u>광양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」----- 재향경찰회의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재향경찰회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」 제5조제2항-----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지역회-----. 제3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「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」 제15조제3항----- 재향경찰회(이하 “경찰회”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제4조(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) ① <u>경찰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(보조금의 반환)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.

-.

② 경찰회-----

-.

제6조(보조금의 반환) ----- 경찰회-----

-----.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광 양 시 장

■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내역

승인번호 및 연월일	목 적	장 소	면 적	기 간	피 승인자	
					주 소	성명
2026-6 (2026. 9. 30.)	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	광양시 태인동 1630-1번지	10,973.94㎡	허가일로부터 5년	광양시 시청로 33	광양시청 (관광과)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

광양시 마동 1125번지 인근 해상에서 추진중인 「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」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광 양 시 장

■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역

피 승인 자		점용 면적	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	실시계획 변경 승인일
성 명	주 소			
광양시장 (관광과장)	광양시 시청로 33 (중동)	이순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당초: 19,034.84㎡ 변경: 11,796.42㎡	당초: 2019. 12. 1. ~ 2022. 12. 31. 변경: 2019. 12. 1. ~ 2026. 12. 31.	2026. 9. 30.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공고 제2026-2088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광 양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		
	대표자 (성명)	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	주소	광양시 중동로 20 (중동)
소하천명		서동소하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다압면 금천리 2815 일원		
	면적	약 0.24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당초: 2021. 10. 20. ~ 2026. 12. 31. 연장: 2027. 1. 1. ~ 2031. 12. 31.		
	목적 및 사유	공작물 설치(콘크리트 전주 설치)		

열람서류

- 1. 실시설계도서
- 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공고 제2026-2091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광 양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위영근		
	대표자 (성 명)	위영근	주소	다압면 대청길 181-47
소하천명		서동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815 일원		
	면적	약 43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당초: 2021. 5. 1. ~ 2026. 12. 31. 연장: 2027. 1. 1. ~ 2031. 12. 31.		
	목적 및 사유	토지의 점용(창고시설 진출입로)		

열람서류

- 1. 실시설계도서
- 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공고 제2026-2093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
광 양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백종철		
	대표자 (성 명)	백종철	주소	광양시 다압면 하천길 225
소하천명		하천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다압면 하천리 548 일원		
	면적	약 45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당초: 2016. 6. 1. ~ 2026. 12. 31. 연장: 2027. 1. 1. ~ 2031. 12. 31.		
	목적 및 사유	공작물 설치(단독주택 진출입로)		

열람서류

- 1. 실시설계도서
- 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

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 위탁기관 선정
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탁자가 아래와 같이 선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9일

광 양 시 장

1. 선정결과
 - 선정업체: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
 - 위탁사무: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·관리
2. 위탁기간: 3년
3. 위·수탁 계약 체결
 - 계약일시: 2026. 9월 중(개별통지)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 도시경관팀(☎061-797-2169)으로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위반 의심 민원 신고에 따라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10월 1일

광 양 시 장

- 1. 공 고 명 :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6. 10. 1. ~ 2026. 10. 15.(15일간)
- 3. 공고장소 :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4. 공시송달 내용

- 가. 처분의 제목: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
- 나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아래 참조
- 다. 법적근거 및 조문 :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
연번	처분 당사자	건 축 물 소 재 지	처분내용	반 송 주 소	반송사유
1	정*	광양시 중 동 1650-7번지	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폭포사랑길 91, 31동 106호 (금호동, 목련연립아파트)	폐문 부재 등

- 5. 유의사항
 -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☎061)797-288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